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90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21.

다. 회부연월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등

가. 개정안 요지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및 안 제18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5. (생략)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u> <u>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u> <u>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u> <u>사항</u> 5. ~ 1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u><신설></u>	④·⑤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2025. 1. 21.)되었고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임.
- 현행법 제8조¹⁾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의 예

-
- 1)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을 위해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기본계획은 행정청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계획²⁾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및 제4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같은 취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 등의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나,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유형 및 관련 소관기관의 중첩성 등을 감안하여 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현행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6년 1월 22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8조의2제2항

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266

은 부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에 해당되고, 이를 위해서는 통상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은 점³⁾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28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821